
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833호
2022. 12. 2.(금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조 레]

제8517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

자치법규

[조 례]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8517호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2년 12월 2일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>

1. 폐지이유

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, 방송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에서 제외하여 티비에스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